

# 철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외형이 아닌 '실질'을 주장한 업무상재해 승소 사례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법원曰 “개인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임을  
인정해야”

## 1. 사건의 배경

2023년 1월, 한 산업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증을 보유한 50대 후반의 개인사업자로, 평소 인부를 태운 자신의 고소작업대를 직접 조종하며 현장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는 한 초등학교 연결통로 지붕재 교체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약 5.9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 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고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 곧바로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법무법인 마중의 변론 및 결과

법무법인 마중은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공단의 처분에 대해, 재해자가 해당 공사현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주장1 견적서 및 현장 진술을 통한 근로자성 입증

재해자는 A회사로부터 7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해당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직접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는 “ 현장에는 자신을 포함한 일용직 3명, 고인, 작업반장 등 총 5명이 있었고,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전화  
02-3143-1158

진술했습니다. 이는 재해자를 포함, 총 5명이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업반장은 위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재해자 외 추가로 5명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으나, 두 진술 모두 재해자가 현장 투입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이는 견적서상의 기록과도 부합하며, 재해자가 단순한 장비 제공자가 아닌,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계 법령

### 주장2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선 작업 수행

재해자는 본래 자신의 업무 범위였던 고소작업대 조종 외에, 지붕재 철거 작업을 직접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철거를 진행하는 작업은 고소작업대 조종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서의 일반적 역할을 명백히 벗어나는 업무였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받은 70만 원은 견적서상 고소작업차 장비대 50만 원과 인건비 약 20만 원이 합산된 금액이었으며, 따라서 이 인건비에는 철거 작업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철거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없었다면, 재해자가 굳이 익숙하지 않은 고위험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합리적 근거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 작업일지를 통해 장비 사용료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근로 대가가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장3 지속적인 작업 수행을 통한 실질적 근로자성 입증

사고 전까지 3년 이상 해당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업무 숙련도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도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 없이도 철거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재해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임과 동시에 단순히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다는 반박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 판결문 中 일부

고인은 A회사에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 조종업무 용역을 제공한 것과 별개로 임금을 목적으로 철거 업무에 필요한 근로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법원은 위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실을 종합한 결과, 재해자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동시에 근로자성을 함께 가진 이중적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 3. 본 판결이 시사하는 바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에서 '개인사업자'라는 외형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외주 및 하도급 구조가 일상화된 건설업 특성상, 장비 보유 여부나 계약 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해왔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동의 실질에 주목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비록 재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해왔더라도, 그 외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보다 넓은 해석 기준을 제공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에 주목해 노동관계를 바라본 이번 판례는, 다양한 고용 형태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보호의 길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본 판결의 결과에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중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특화된 로펌으로, 신청부터 소송, 합의, 유관 법률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

## 관련 구성원

**김용준**

대표변호사

yrince@majunglaw.kr

**박꿈이룬**

변호사

kkumirun@majunglaw.kr

##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

\* 법무법인 마중 레터는 일반적인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마중의 공식적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서울 광화문 | 대전 | 부산 | 대구 | 광주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